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대 검 찰 청	보 도 자 료 2021. 11. 26. (금)
	대변인실 전화 02-3480-2100 / 팩스 02-3480-2704	자료문의 : 형사2과 전화번호 : 02-3480-2270 주책임자 : 형사2과장

제 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

- '21. 11. 25.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. 6. 9.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48조의2 제1항 중 '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' 부분에 관하여 **위헌 결정**하였습니다.
-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위 조항의 **처벌규정이 효력 상실 되었으므로,** 대검은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하였습니다.

1. 수사 중인 사건

○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**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**

-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혈중알콜농도 구분에 따라 처벌

2. 재판 계속 중인 사건

① 1·2심 계속 중인 사건인 경우 (파기환송심 포함)

○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**공소장 변경**하고, **죄에 상응하는 구형**

○ 이미 **변론종결**되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**즉시 변론 재개 신청 후 공소장 변경**

② 1·2심 법원의 판결 선고 후 확정되기 이전의 경우

○ **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·법률 위반**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**피고인을 위하여 상소 제기**

3. 재판이 확정된 사건

○ **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**에는 재심절차에 따르되(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), 검사는 재심절차에서 **공소장 변경 등 조치**

※ 재심 청구는 심판 대상이 된 **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**